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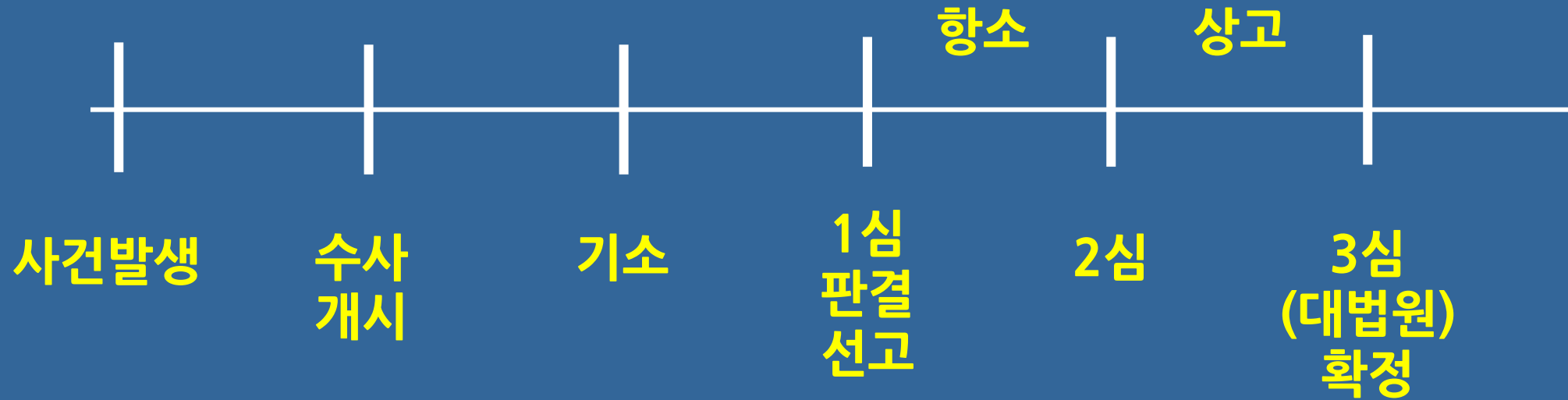
형사법 개념 특강

프라임경찰학원 형사법
장승일

형사법



甲이 乙을 살해함
(사체발견)



형법이란?

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규범

형법 제250조

-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헌법 제12조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3조

-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6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1조(간통)

-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형사법기초

-범죄의 개념/ 종류-

1. 범죄의 개념

① 형식적 범죄개념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책한 행위, 형법에 범죄로 규정된 행위

② 실질적 범죄개념

반사회적 행위, 사회적 유해행위, 형법에 규정되지 않는 행위도 포함

2. 범죄의 성립요건

-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3. 범죄의 처벌조건

형법 제328조

-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4. 범죄의 소추조건

- 공소제기의 유효요건
- **친고죄** : 사자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 **반의사불벌죄** :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1. 결과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범죄 (대부분)

VS **거동범** → 결과발생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 (주거침입죄, 무고죄)

2. 침해범

법익의 현실적 침해를 요하는 범죄

VS **위험범** → 법익에 대한 위험발생으로 성립하는 범죄

① 구체적 위험범, 추상적 위험범

② 유기죄/ 일반물건방화죄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계속범

범죄가 기수가 된 후에도 그 법익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범죄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범죄를 말한다.

ex. 체포감금죄

VS 상태범(즉시범)

→ 행위의 완성, 결과의 발생, 범죄성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범죄

4. 신분범

(1) 진정신분범

신분이 있어야만 그 범죄를 할 수 있는 경우(수뢰죄)

(2) 부진정 신분범

신분에 따라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

(ex. 존속살해죄, 영아살해죄)

형법 제250조

-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0조

-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자수범

행위자가 직접 실행해야만 하는 범죄(간접정범 성립 불가능)
(ex. 위증죄)

제152조(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수범

간접정범

- 간접정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한다.



형사법기초

- 부작위범 -

서울에 있는 아버지가 한강에 빠져 허우적 대는 아들을 구하지 못하면 무슨 죄가 될까?

1. 부작위범

- 작위와 반대되는 개념
- 대부분의 범죄는 부작위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

2.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구성요건적 상황 :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위험
- 부작위 : 작위의무 불이행
- 행위의 가능성 : 행위자의 구체적인 행위가능성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형법 제319조

-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진정부작위범

부작위로만 실현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

- 구성요건적 상황, 요구되는 행위의 부작위, 작위행위의 가능성, 결과발생 및 인과관계

2. 부진정부작위범

(1) 작위의 구성요건을 부작위로도 실현가능한 범죄

(2)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 규정이 없음
-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작위적 방법에 의한 것과 동등한 평가를 가질만한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서울에 있는 아버지가 한강에 빠져 허우적 대는 아들을 구하지 못하면 무슨 죄가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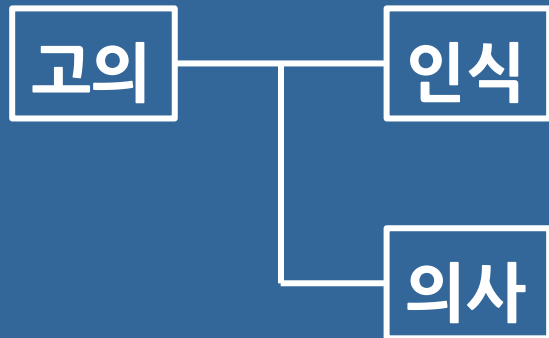
형사법기초

- 고의-

갑이 A를 살해하려고 할 때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250조

-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0조

-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고의의 내용 : 인식(지적요소)과 의사(의지적 요소)

(1) 인식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의미의 인식(규범적 요소)
처벌조건, 소추조건, 행위의 위법성 → X

(2) 의사(의지적 요소)

- ① 범행을 실현하려는 마음
- ② 기수의 고의

2. 고의의 종료

(1) 확정적 고의

(2) 불확정적 고의

- 미필적 고의

장래 발생할 결과에 대한 이해 정도에 지적요소가 가능성의 단계라든지, 의지적 요소가 용인의 단계에 불과한 고의를 말한다.

-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개연성설, 가능성설, 용인설, 감수설)

피해자들의 머리나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를 낫이나 칼로 찌르지는 않았
다 하더라도,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목을 마구 때리고
낫으로 팔과 다리를 난자한 이상, 위 피고인들이 자기들의 가해행위로 인
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3.22. 93도3612)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전합)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